

의안번호	2219979
의 퇴 인	서삼석의원
회 답 일	2026. 9. 11.
추 계 번호	26B3359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6,700만원(연평균 3,300만원)으로 추계됨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(안 제27조의2)	167	-	-	-	-	167	33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)	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·보급 등을 위하여 해양생태도, 해양생물종 및 서식지에 관한 정보, <u>보호지역(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)에 관한 정보</u> 등을 전산화한 해양생태계정보체계(이하 “해양생태계정보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(제1항) ※ 해양생태계정보체계에 ‘해양보호구역 등 보호지역에 관한 정보’ 포함	재량규정
2	안 제27조의2(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신설	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지정·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29조의2(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의 설치·운영) 신설	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(제1항)	재량규정
4	안 제42조의2(기타보전관리해역의 등록 등) 신설	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할 수 있다.(제1항) 1. 해양보호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.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. 관계 법령, 계획 또는 협약 등에 따른 보전·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	재량규정
		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타보전관리해역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(제2항)	의무규정
		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타보전관리해역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(제3항)	재량규정
5	안 제42조의3(기타보전관리해역의 관리 등) 신설	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기타보전관리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이라 한다)은 기타보전관리해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(제1항)	재량규정
		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(제2항)	재량규정
		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,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(제3항)	재량·의무 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						
1	안 제7조(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)	-	• 미대상 － 개정안은 해양생태계정보체계에 ‘보호지역에 관한 정보’를 추가하려는 것으로,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현행법에 따라 ‘해양환경정보포털(www.meis.go.kr)’을 구축·운영 중으로 동 포털 내 ‘해양환경정보지도’에서 해양보호구역 정보를 기 제공하고 있으며, 개정안에 따라 보호지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소요비용 없이 현행 운영예산으로 수행가능하다는 의견임 (단위: 백만원) <table><tr><th>사업명</th><th>사업 내용</th><th>2026</th></tr><tr><td>해양환경정보 (정보화)</td><td>해양환경정보를 통합·연계하여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관리 및 정보제공·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해양환경정보의 통합 제공 － 해양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·운영, 유지관리 등</td><td>599</td></tr></table>	사업명	사업 내용	2026	해양환경정보 (정보화)	해양환경정보를 통합·연계하여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관리 및 정보제공·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해양환경정보의 통합 제공 － 해양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·운영, 유지관리 등	599
사업명	사업 내용	2026							
해양환경정보 (정보화)	해양환경정보를 통합·연계하여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관리 및 정보제공·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해양환경정보의 통합 제공 － 해양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·운영, 유지관리 등	599							
2	안 제27조의2(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신설	○	•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						
3	안 제29조의2(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의 설치·운영) 신설	-	• 미대상 －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시 ‘해양환경공단 해양보호복원처 내 보호구역팀’을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정안에 따른 사무를 수행케 할 예정이므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					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4	안 제42조의2(기타보전관리해역의 등록 등) 신설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, 등록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-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타보전관리해역의 등록은 대상지역의 공간 데이터 및 속성정보 등 관련 문서를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므로, 등록에 따른 별도의 소요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- 다만, 등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조사 대상 지역 등이 특정되지 않으며, 조사 및 의견 수렴 내용 및 방식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5	안 제42조의3(기타보전관리해역의 관리 등) 신설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타보전관리해역의 해양생물다양성·해양생태계 보전 및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및 사업성과 평가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향후 등록되는 기타보전관리해역을 예측하기 어려우며, 관련 사업 등의 내용 및 방식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27조의2)

- 개정안에 따른 ‘해양보호구역¹⁾²⁾ 기본계획’ 수립 비용은 해양수산부의 유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

[표 2] 해양수산부의 유사사례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년도	사업명	사업비
2026	제5차 연안습지보전기초계획 수립 연구용역	100
2026	제5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	100
2025	제2차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	300
평 균		167

자료: 해양수산부

-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 중 1차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- (추계 결과)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6,700만원 (연평균 3,3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평균
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	167	—	—	—	—	167	33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1) 제25조(해양보호구역의 지정·관리)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·관리할 수 있다.
 1.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
 2. 해양의 지형·지질·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
 3.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·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
 4.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
 5. 산호초·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
 6.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
 7.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
- 2) 2026년 현재,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총 22개소임(생태계 18, 생물 3, 경관 1)
(출처: 해양환경정보포털,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18개소는 제외)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